

2025년 4단계 BK21사업 우수대학원생 국제공동연수 공고 관련 FAQ

<BK21사업팀, '25. 3. 10.>

□ 공고 및 선발

Q1. 2025년 우수대학원생 국제공동연수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BK21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NIS, IRIS, HPP 등에서 '2025년도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추진일정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국제 공동연수 기간을 1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A2. 연수기간은 '6개월/12개월' 2가지 중 하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접수 시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대학원생 여부는 무관하며, 4단계 BK21 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전일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생이면 가능합니다. 단, 전일제 여부는 학적부, 4대보험 등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참여대학원생 자격 준용)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수행 중인 교육연구단(팀)에 참여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석사, 박사, 통합과정 모두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하였으면 가능함(4단계 전 단계 참여 이력은 산입 불가)

※ 박사수료생의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수료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Q4.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대학 내부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대학원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5. 국제 공동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5. 국제 공동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해 참여대학원생 및 지도교수와의 논의 후 연수지 및 연수기관을 컨택 및 선정하시고, 해당 선정완료 사항을 연수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기관 확정 관련 서류는 대학에서 보관증빙으로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Q6. 박사수료생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수료 이후 2년에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을까요?

A6. 임신·출산으로 인해 연구 활동이 중단된 기간은 대학 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출산 1회당 최대 1년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국제 공동연수 계획(연수기간,기관 등) 변경 시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경 신청과 함께 재단으로 공문 발송도 필요한가요?

A7. 국제 공동연수 계획 변경 시, 사업 종합정보시스템(<https://bk21four.nrf.re.kr/bkms>)을 통한 변경 승인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별첨4] 참고)

Q8. '26.2.28까지 출국이 어려울 경우, 출국일 연장이 가능한가요?

A8.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26.2.28.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 출국일 연장(사업비 이월)이 불가하며,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Q9.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 귀국이 가능한가요?

A9.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 귀국의 경우 재단으로 사전에 사업 중도포기 신청 공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단,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재신청 제한 및 차년도 소속 대학의 선발인원 배분 등에 패널티 부여(6개월 신청자도 해당)

Q10. [서식] 신청서의 어학능력 자격시험은 만료된 점수여도 가능한가요?

A10. 만료된 점수여도 기재 가능합니다.

Q11. 추가공고는 언제 진행될 예정인가요?

A11. 현재 추가 공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선정 인원이 미달될 경우 7월 중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여부 및 일정은 추후 확정될 경우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대학자체 선발 평가 / 재단 선발 평가

Q1. 평가패널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A1. 평가패널에 대한 구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나, 인문/과기 분야로 패널을 나눠서 운영을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대학 내 심의결과에 따라 1개의 패널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Q2. 대학 자체 선발일 경우, 대학별 배분 인원 외 교육연구단(팀)별 지원 가능 인원이 정해져있나요?

A2. 교육연구단(팀)별 지원 가능 인원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Q3. 대학 자체 선발의 경우, 배분 인원 외 후보인원 추천이 가능한가요?

A3. 네, 대학 배분인원 외 선발 후보 인원은 5명까지 추가 추천 가능합니다.

Q4. 선발인원 배분이 6개월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는데, 연수기간은 6개월만 선발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각 대학은 총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연수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자유롭게 선발하실 수 있습니다.

※ 1인당 지원액: (6개월) 최대 14백만원, (12개월) 최대 26백만원

Q5. (별첨2) '국제 공동연수자 대학 선발 평가 가이드'는 대학 자체 평가 시, 필수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A5. 네, 맞습니다. 대학 자체 평가 시 제공드린 가이드 내 사항을 준수하시어 평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가이드 위반 시, 해당 대학은 국제 공동연수자 선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Q6. 재단 선발 대상 대학의 추천 인원은 대학별 제한이 있나요?

A6. 재단 선발 대상 대학의 추천 인원은 대학별 2명 이상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1명 추천 가능

□ 사업비 지급 및 결과보고

Q1. 국제 공동연수 선발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A1. 재단에서 대학(주관기관)으로 입금되며, 대학 내 관련 부서에서 연수생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Q2. 항공권의 경우, 일정상의 사유로 학생 또는 대학(산학협력단)이 선결제 후 협약액이 입금되면 페이백 처리해도 되나요?

A2. 선결제 이후 협약금액 입금 이후 페이백 또는 계정대체 진행 가능합니다.

Q3. 참여대학원생 신분 유지 시 교육연구단(팀)의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기준이 있을까요?

A3. 연수기간 중 참여대학원생 신분 유지 시 연수비* 성격이 아닌 비용은 교육연구단(팀)의 사업비(국제화경비, 연구활동/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등)에서 지급이 가능하나, 연수비는 이중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 연수 건으로 교육연구단(팀)의 사업비에서 여비, 체재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고, 학회 참석, 논문 게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 가능

Q4. 중도 귀국 시 사업비 월할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월할 계산 시, 월 15일 이상 연수를 수행하였을 경우 해당 월 연수비는 전액 지급되며, 15일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Q5. 결과보고 관련 서류(착수,중간,결과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A5. 착수, 중간, 결과보고서는 해당 서류 제출 기한 내 연수자가 대학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대학에서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6. 국제 공동연수비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6. 연수비 정산은 연수 종료 이후 '27년 6월까지 BK21 종합정보 시스템 내 정산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별첨5 참고)

※ 정산 시기에 연수가 종료되지 않은 인원에게 대해 개별 정산 진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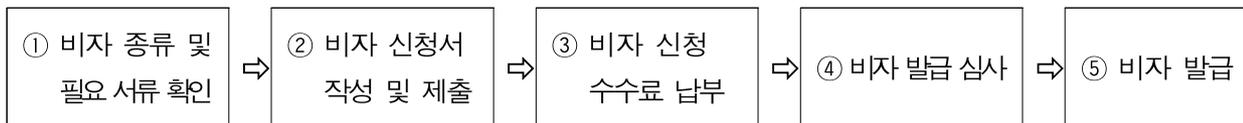
□ 비자 관련

Q1. 연수와 관련하여 비자 발급은 개인이 진행하면 되나요?

A1. 네, 비자 발급은 개인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무비자 및 여행비자 등은 안전한 연수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불가하며, 학생비자, 유학비자 등 목적 및 체류 기간에 맞는 비자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비자 발급 절차 가이드가 있나요?

A2. 국가별로 상이하나, 보통 아래 절차로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별 행정절차 및 대학별 학기개시일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호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 시 대학 인증 절차 요구

※ 자세한 사항은 연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확인 필요

□ 기타 사항

Q1. 연수기간 중,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3국을 방문할 경우, 방문 일자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3국 방문시,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외 공동연구 수행 중 일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귀국허용일수)는 전체 연수기간 1년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해야 함